

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[별표 4] <개정 2023. 3. 21.>

어업활동 또는 시험·연구 등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(제22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가목의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1) 어업활동 허가기간이나 시험·연구 승인기간의 종료로 동일인이 같은 선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
 - 2) 행정처분을 받은 선박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해당 선박이 임차되어 같은어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
- 라.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고,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각각의 행정처분 기준이 정지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정지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.
- 마.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처분에 관하여 외국과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합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
- 바. 어업활동 허가 또는 시험·연구 승인의 정지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정지일수에 30일을 추가하여 행정처분을 하되, 또 다시 그 행정처분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어업활동 허가 또는 시험·연구 등의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.

2. 개별기준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가. 법 제4조를 위반하여 외국인이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한 경우	법 제13조	정지 60일	정지 90일	취 소
나.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활	법 제13조	취 소	—	—

동의 허가(이하 이 표에서 "허가"라 한다)를 받거나 시험·연구 등의 승인(이하 이 표에서 "승인"이라 한다)을 받은 경우				
다. 법 제5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항 외의 어업활동 등을 한 경우	법 제13조	정지 60일	정지 90일	취 소
라. 법 제5조제3항 또는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번호판 또는 승인번호판을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 사실을 적은 허가번호판 또는 승인번호판을 갖추어 둔 경우	법 제13조	정지 30일	정지 60일	정지 90일
마. 법 제5조제3항 또는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알아보기 곤란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허가번호판 또는 승인번호판을 갖추어 둔 경우	법 제13조	경 고	정지 30일	정지 60일
바. 법 제5조 및 제8조, 이 규칙 제10조 및 제30조를 위반하여 입역·출역 또는 어업활동 중임을 표시하는 표지깃발을 게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양한 경우	법 제13조	정지 30일	정지 60일	정지 90일
사. 법 제5조 및 제8조, 이 규칙 제10조 및 제30조를 위반하여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알아보기 곤란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표지깃발을 게양한 경우	법 제13조	경 고	정지 30일	정지 60일
아. 법 제5조 및 제8조, 이 규칙 제10조 및 제30조를 위반하여 허가사항 또는 승인사항이 변경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	법 제13조	경 고	정지 30일	정지 60일

어업활동 등을 계속한 경우				
자.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종별 할당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경우	법 제13조	정지 30일	취 소	
차. 법 제6조, 영 제3조 및 이 규칙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어선 규모 또는 어구 규모를 초과하거나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싣거나 사용한 경우	법 제13조	정지 30일	정지 60일	취 소
카. 법 제7조, 영 제4조 및 이 규칙 제15조를 위반하여 어업 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입어료를 최종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	법 제13조	취 소		
타. 법 제10조 및 이 규칙 별표 3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입국 시키는 행위에 선박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대한민국의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저해하는 행위에 선박을 이용한 경우	법 제13조	정지 90일	취 소	
파. 법 제10조 및 이 규칙 별표 3을 위반하여 수산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국가 간의 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어업활동 등을 한 경우	법 제13조	정지 30일	정지 60일	취 소
하. 법 제10조 및 이 규칙 별표 3을 위반하여 어획일별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종별 어획실적을 기록·유지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기록·유지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	법 제13조	정지 30일	정지 60일	취 소
거. 법 제10조 및 이 규칙 별표 3을 위반하여 포획·채취 금	법 제13조	정지 30일	정지 60일	정지 90일

지 체장(體長), 포획·채취 금지구역과 기간, 어구 사용금지구역과 기간, 특정 어구의 사용금지, 그물코 및 어구 규모의 제한을 준수하지 않고 어업활동 등을 한 경우				
너. 법 제10조 및 이 규칙 별표 3을 위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정선, 승선, 서류조사 등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	법 제13조	정지 60일	취 소	—
더. 법 제10조 및 이 규칙 별표 3에 따른 제한 또는 조건 중 이 행정처분의 기준에 열거되지 않은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	법 제13조	정지 20일	정지 40일	정지 60일
러.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실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은 경우	법 제13조	정지 30일	정지 60일	취 소
머.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한 경우	법 제13조	정지 30일	정지 60일	취 소